

2019년도 제3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 | | |
|---------|--|
| ○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16:00 |
| ○ 장 소 | 동구쪽방상담소 |
| ○ 참 석 | 5명(홍재봉, 박시우, 안하원, 이주은, 최창용) |
| ○ 부의안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의안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심의·의결- 제3호 의안 :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 ○ 기 록 자 | 김일범(팀장) |

▶ 성원보고

- 김일범 팀장이 재적 7명 중 참석 5명으로 성원이 구성되었음을 보고하다.

▶ 개회선언

- 홍재봉 대표이사가 2019년도 제3차 임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대표이사 인사말

- 홍재봉 대표이사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다.

▶ 회순채택

- 홍재봉 대표이사가 회순으로 전자회의록 보고와 부의안건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심의·의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의 순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물자 박시우 이사가 동의하고 최창용 이사가 재청한 후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회순을 채택하다.

▶ 전자회의록 보고

- 김일범 팀장이 이사회 회의자료(p.2~6)를 토대로 전자회의록을 보고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전자회의록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는지 물자, 이주은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박시우 이사가 재청한 후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전자회의록 보고를 마친다.

▶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건

- 김일범 팀장이 이사회 회의자료(p.8~12)와 별지[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안)]를 토대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건을 설명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는지 묻다.
- 이주은 이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경성어린이집의 기관장 임면과 직원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경성어린이집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현재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직책 변동 없이 고용 승계 될 것이라고 답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는지 묻자, 박시우 이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을 2020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수탁하는 것과 현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직책 변동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등의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최창용 이사가 재청한 후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경성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건을 의결하다.

2. 제2호 의안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심의·의결

- 김일범 팀장이 이사회 회의자료(p.13~15)를 토대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는지 묻다.
- 이주은 이사가 현재 법인의 여건에서 전입금 마련이 가능할지 질의하다.
- 최창용 이사가 현재 법인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기로 결정된 이상 다 같이 노력하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모범적인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참석 이사들에게 요청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는지 묻자, 최창용 이사가 이사 및 운영위원회, 후원회의 후원금 출연, 외부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운영비 확보,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및 MOU 체결, 민간자원 개발 등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5,000천원 씩 5년 간 총 25,000천원을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이주은 이사가 재청한 후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을 의결하다.

3. 제3호 의안 :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김일범 팀장이 이사회 회의자료(p.16~18)를 토대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설명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는지 묻다.
- 박시우 이사가 '제15조(운영관리)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등록 및 관리'

을 삭제한 ‘제15조(운영관리)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의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산하시설 운영관리(안) 전체 내용에서 ‘규칙’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규정’으로 수정할 것과 ‘제11조(시설분류) ② 수탁시설이라 함은 국가나 자치단체’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제11조(시설분류) ② 수탁시설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박시우 이사가 ‘제20조(감사) 법인은 시설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를 ‘제20조(감사) 법인은 시설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하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홍재봉 대표이사가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는지 물자 이주은 이사가 위의 내용들을 반영한 수정(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박시우 이사가 재청한 후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다.

▶ 폐회

- 홍재봉 대표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물고,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2019년도 제3차 임시 이사회를 폐회하니 17시 10분이다.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19년 10월 15일(화)

확인자 대표이사

홍재봉 (인)

이사 안하원 (인)

이사 최창동 (인)

이사 양시우 (인)

이사 이주은 (인)